

##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6-396호

###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

「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·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7월 8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#### 1. 개요

▣ 지정대상 : 사회적 농장

▣ 지원자격 : 「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정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#### 2. 제출 방법

▣ 제출기간 : 2026. 7. 13.(월) 09:00 ~ 7. 31.(금) 18:00

▣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(jupiter4628@korea.kr)

- (등기우편 수신처)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/ 우. 30110

\*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(7.31.금요일까지) 우체국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

#### 3. 제출 서류

▣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(운영지침 붙임1)

\* 신청서 내 '농장 현황'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로써 농업경영체 농지 또는 임대농지가 가능하며, 임대(무상임대 포함)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, 건물토지사용동의서 등 제출

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(운영지침 첨부1)

\*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 포함해서 제출

\*\*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

▣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(운영지침 첨부2)

\* 프로그램별 운영 계획(지침 30p) '재원 확보 방안'에 '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' 보조금 작성 불가

\* 사업유형(돌봄, 치유, 고용, 교육) 중 '치유' 분야 신청 시, 대표자 또는 치유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(증빙자료 제출)

- 1) 치유농업사, 2)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142시간 수료, 3)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150시간(기초 100+심화 50) 수료

▣ 사회적 농장 운영 관련 인력 현황(운영지침 첨부3)

\* 내부 참여인력은 신청 조직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에 따른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작성

\* 운영계획 수립, 농장관리, 프로그램 제공, 회계관리를 포함하여 임직원별 역할 기재

▣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이수증(운영지침 첨부4)

\*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강사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

\*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주관한 사회적 농업 교육만 인정

\* 공고일 기준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장은 서류심사 기간까지 교육접수증을 제출하고, 최종심의 전까지 교육이수증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교육시간 인정

▣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운영지침 첨부5)

▣ 사회적 농장의 시설·설비 현황(운영지침 첨부6)

▣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(운영지침 첨부7)

\* 사회적 농장(사회적 농업 프로그램) 운영계획 및 운영비용·정산사항 포함

#### 4. 심사방법 및 일정

▣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

- 서류심사 : 2026. 8. 3.(월) ~ 8. 19.(수)

- 현장심사 : 2026. 8. 24.(월) ~ 9. 16.(수)

▣ 최종심의 : 2026. 9. 28.(월) ~ 9. 30.(수)

▣ 결과발표 : 2026. 10월 /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

\* 상기 심사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

#### 5. 유의사항

▣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알아보기 힘든 서류는 인정 불가

▣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참고(2026년 4분기 사회적 농장 신청서 접수일정(안))

▣ 4분기 : 2026. 10. 1.(목) ~ 10. 16.(금)

붙임 2026년 사회적 농장 지정 운영지침. 끝.